

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의 예외 공표

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“잠실권역 교통정보시스템 구축 사업”에 대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예외의 사유를 공표합니다.

2014년 5월 16일

서울특별시

1. 사업명 : 잠실권역 교통정보시스템 구축 사업

2. 사업내용

- 도로전광표지 설치 등 실시간 교통정보 제공 체계 구축
- 지능형 영상검지 등 교통정보 수집 체계 구축
- 지속가능한 교통정보서비스를 위한 무선통신망 구축
- 서울 지능형교통시스템(ITS) 플랫폼 구축 등

3. 사유

본 사업은 국가교통체계효율화법에 의한 교통체계지능화 사업이면서 전자정부법 및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등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이며,

교통·정보통신·전기·토목구조·정보시스템·디자인 등 각 분야별 복합된 고도의 기술의 통합과 도로전광표지, 무선전송장치, 지능형 영상검지 체계 등 현장 시스템 및 이들 시스템 등을 하나로 유기적으로 연계·통합하는 플랫폼 등이 모두 포함된 미규격화된 특정한 기술의 지능형 교통시스템이란 계약목적물을 완성하는 사업임

이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해당되는 경쟁제품(교통정보전광판)은 본 사업의 계약 목적물 즉 완성품을 구성하는 일부에 불과하고, 위에서 열거한 여러 시스템간의 유기적 연계, 통합을 통해 특정 기술 등이 집약된 지능형교통시스템 구축하는 것이 본 사업의 완성품임을 고려할 때 특정한 기술·용역이 요구되어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의 예외가 필요함

또한,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(타법과의 관계)에 따르면 “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”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본 사업의 일부에 불과한 경쟁제품(교통정보전광판) 인해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,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타 법률 등에 정한 입찰참가자격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만을 적용하여 중소기업자로 한정하는 것은 타 법률의 제정취지를 훼손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 사업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의 예외를 적용하고자 함

<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예외 적용 경쟁제품 내역 >

제품군	세분류		세부분류	
	세	품명	세부	세부분명
전광판	55121903	전광판	5512190303	교통정보전광판

4. 문의사항

본 공표에 관련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신 분은 서울특별시 도시교통본부 교통정보센터(담당 : 김진구, ☎02-2133-4954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